

doTERRA Korea 온라인 판매 가이드라인

도테라코리아(유)는 IPC 계정을 부여 받은 회원에게만 인터넷을 통한 당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드립니다. 아울러 당사의 방침 및 절차와 아래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여 운영해 줄 것을 권고 드립니다. 온라인 판매를 위한 세부 절차 및 가이드 라인은 아래와 같습니다.

온라인 판매(웹사이트) 사전 심의

1) 사전 심의 신청 시 안내 사항

- ① 제출된 신청서는 도테라코리아 윤리강령부에서 관련법률과 당사의 방침 및 절차에 근거하여 심의 합니다.
- ②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접수 후 10일 이며, 사안에 따라 지연 될 수 있음을 안내 드립니다.
- ③ **온라인 판매(웹사이트)는 심의가 모두 완료되어 당사의 허가 공문을 수령한 이후부터 오픈 및 운영 가능합니다.**
- ④ 당사 관련규정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신청은 통과되지 않을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납되지 않습니다.
- ⑤ 심의에 통과 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는 윤리강령부에서 정기적으로 당사의 방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 지 확인 할 것이며, 이에 반하는 내용이 발견되면 시정요청이나 사이트폐쇄 등의 제재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 ⑥ 심의에 통과하여 운영 중인 웹사이트가 윤리강령부 또는 외부 신고로 인하여 관련 규정을 **3회 이상 위반 시 서면을 통해 당사의 방침 및 절차에 따라 사이트 폐쇄 등의 조치**가 취해 질 수 있습니다.
- ⑦ 운영 중 웹사이트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에 재 심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2) 사전 심의 신청 시 첨부 서류

- ① 웹사이트 사전심의 신청서(당사 내부 양식)
- ② 웹사이트 운영 계획서
- ③ 인터넷 포스팅 전 웹사이트 전체 화면 스크린카피
- ④ 판매 제품 목록 및 가격 리스트(웹사이트에 제품이 모두 업로드 안됐을 경우)
- ⑤ 사업자등록증(업태: 전자상거래업)
- ⑥ 통신판매업 신고
- ⑦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건강기능식품 판매 시 해당)

※ ⑤~⑦은 해당 구청 등을 통한 영업신고 후 구비 가능

3) 접수 방법

- ① 이메일(krcompliance@doterra.com)
- ② 팩스 02-2137-5492

③ 비즈니스센터 접수

1. 웹사이트 운영 시 유의 사항

1) 웹사이트의 사용 목적

- 웹사이트 운영에 있어 도테라코리아 회사와 제품만을 홍보 또는 판매하기 위한 단독 웹사이트여야 합니다.

2) 제품 판매

- 웹사이트를 운영하고자 하는 IPC 주체는 회원공급가 이상의 가격을 권장합니다.
- 도테라코리아 제품 중 LRP 키트 및 회원 등록 키트와 같이 회원들만을 위한 제품은 판매하지 않습니다.
- 도테라코리아 회원에 한해 진행하는 본사 프로모션을 IPC 개인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예. 200PV 프로모션, 이 달의 제품, BOGO 등)
- 도테라코리아의 정식 통관을 거쳐 등록을 한 제품만 웹사이트를 통해 판매할 수 있으며, 한국에 정식 통관을 거치지 않은 도테라 제품의 판매는 국내법 위반에 해당하여(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등 실정법 위반) 이러한 제품의 판매 및 이미지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품질 표시로 제품 이미지 이용 포함)
- 웹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별도의 프로모션을 진행할 경우에는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 특별 추가 증정 프로모션, 무료배송, 가격할인 등)

3) 온라인(웹사이트) 판매의 범위

- ① 도테라 제품만을 판매하기 위한 단독 웹사이트로만 활용하며, 타사 제품과 함께 판매하지 않습니다.
- ②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11번가 등 오픈 마켓 사이트 및 벼룩시장 및 중고나라와 같은 중고 제품 유통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③ 네이버와 다음을 포함한 포털사이트 내 카페 및 블로그, 스토어팜과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사이트 등에서의 제품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 ④ 단, 판매 목적이 아닌 도테라코리아와 그 외 제품을 홍보하는 IPC의 블로그 사용은 가능합니다.

4) 필수 기재 사항

- ① 상단 로고 게시(doTERRA Independent Product Consultant 로고)



- ② 하단 문구 게시

“본 사이트는 도테라코리아(유)에 가입되어 있는 IPC(Independent Product Consultant),

회원이 운영하는 사이트로, 미국 도테라인터내셔널 엘엘씨 및 도테라코리아(유)와는 무관합니다.”

5) 정보 공개 요구 및 제한

웹사이트 운영자는 언제든지 회사가 웹사이트와 소비자 판매 정보를 요청하거나, 확인을 요구할 경우 회사에 답변서 제출 및 확인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 하여야 합니다.

2. 검색엔진

1) 도테라코리아 고유의 지적 재산의 명칭(예. 회사명, 회사 제품명, 회사 상표 등)을 URL 및 도메인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회원의 웹사이트명(한글사이트명)에 '도테라'가 포함되지 않게 운영합니다.

단, 그 외 소개문구, 사이트 설명을 위한 키워드 등의 검색엔진에서는 도테라 및 도테라코리아 고유 블렌딩 제품 등의 사용은 가능합니다.

2) 유료 등록을 통한 IPC의 웹사이트 상위노출(예. 네이버 파워링크, 다음의 프리미엄 등록 등의 상위노출)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3) 특정질병, 질병 호전 및 질병과 연관된 키워드를 사용, 이를 웹사이트에 광고하거나, 또는 이를 포함하는 검색 매개변수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회사 지적 재산의 사용 (상호와 저작권 침해 금지)

상표, 서비스 마크, 상품명, 상품외장 및 회사의 출판물 내용을 포함하는 도테라의 지적 재산은 매우 소중한 자산입니다. 도테라 지적 재산을 사용할 때 IPC는 도테라 지적 재산에 매우 큰 가치와 영업권리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하고 인정하며 지적 재산에 대한 권리와 거기에서 발생하는 영업권리는 오로지 회사에게만 있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1) 회사 상호의 사용과 저작권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은 회사의 자산이며, 회사는 회사의 가치를 잃지 않기 위해 회사의 상호와 저작권의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IPC는 회사의 상표, 저작권 및 기타 모든 지적 재산권을 허가되거나 회사에 의해 서면으로 승인된 것을 제외하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회사의 로고나 상호의 게시 금지

회사의 로고나 상호 등을 웹사이트를 포함하여 아파트, 주택, 사무실, 점포 또는 기타 유형의 물체 전면이나 행인이 볼 수 있는 기타 건물에 사용하거나 게시하여서는 안됩니다.

단, 회사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가능한 로고는 아래와 같으며 회사의 승인 없이 지적재산권 등의 소유권적 정보를 침해하여 다른 로고를 등록하여 사용할 경우 이는 상표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예시] 도테라코리아독립제품컨설턴트 000사무실, 도테라IPC 00000그룹
[사용 가능 로고] IPC 로고, 블랙, 라벤더, 화이트 3가지 사용 가능합니다.



4. 상품의 홍보 및 표시 사항

1) 의학적 효능, 효과 표시, 광고 금지

IPC는 상품을 홍보, 판촉 함에 있어 해당 상품이 회사 또는 다른 기관에 의해 질병 치유 등 의학적인 목적을 위하여 고안, 제조, 승인된 것으로 오인토록 설명, 표시, 광고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표시 광고 등을 하는 경우, 회사의 상품이 화장품 또는 일반 식품, 혹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다른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IPC는 웹사이트 운영 시 회사의 상품을 의약품과 비교하거나 의학적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표시 광고를 하는 것이 금지 됩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여 표시 광고를 할 경우에는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IPC에게 있습니다.

2) 상품 포장의 수정

IPC는 상품의 포장, 라벨, 상품 소개 및 사용 방법 등을 무단으로 수정, 변경 할 수 없습니다. IPC는 회사가 권장하거나 회사에 의해 사전 승인된 상품 사용법 이외의 내용은 설명 할 수 없으며, 판매 또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무단으로 포장, 라벨 등의 수정, 소분하여 변경할 경우 모든 책임은 IPC에게 귀속되며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당사는 해당 IPC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규정 위반에 따른 처분

1) 위반의 예

- ① 허위·과대 광고 시
- ② 회사 고유의 지적 재산 사용과 저작권 침해 시
- ③ 허가되지 않은 오픈 마켓에서의 판매 시
- ④ 기타

2) 처분

- a 제품의 주문, 회사 프로그램 참여, 보상플랜에서의 승급 등의 IPC 특권 중지
- b 일정기간 동안 또는 IPC가 특정 조건 충족할 때까지 후원수당 또는 보너스 보류
- c IPC 계약 해지
- d 법률이 허용하는 벌금 또는 기타 위약금 부과
- e 부득이한 경우 민·형사상 법적 절차

6. 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7. 화장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8. 건강기능식품의 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6, 7, 8 범위에 대한 법률 사항은 아래 [첨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화장품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표시·광고의 범위 등)

화장품 표시·광고의 범위 및 준수사항

<p>화장품 광고의 매체 또는 수단</p>	<p>가. 신문·방송 또는 잡지 나. 전단·팸플릿·견본 또는 입장권 다. 인터넷 또는 컴퓨터통신 라. 포스터·간판·네온사인·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마. 비디오물·음반·서적·간행물·영화 또는 연극 바. 방문광고 또는 실연(實演)에 의한 광고 사.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의 포장 아. 그 밖에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p>
<p>화장품 표시·광고 시 준수사항</p>	<p>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효과 등에 대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나.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등에 관하여 기능성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의료기관·연구기관 또는 그 밖의 자(할랄화장품 또는 유기농화장품 등을 인증·보증하는 기관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관은 제외한다)가 이를 지정·공인·추천·지도·연구·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나 이를 암시하는 등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다만, 법 제 2 조제 1 호부터 제 3 호까지의 정의에 부합되는 인체 적용시험 결과가 관련 학회 발표 등을 통하여 공인된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관련 문헌을 인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용한 문헌의 본래 뜻을 정확히 전달하여야 하고, 연구자 성명·문헌명과 발표연월일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라. 외국제품을 국내제품으로 또는 국내제품을 외국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마. 외국과의 기술제휴를 하지 않고 외국과의 기술제휴 등을 표현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표시·광고는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분명히 밝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는 사항만을 표시·광고하여야 하며, 배타성을 띤 "최고" 또는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의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사.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아.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법 제 2 조제 1 호에 따른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자.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도안·사진 등을 이용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차.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암시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p>

카.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광고를 하지 말 것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

구분	금지표현	비고
질병을 진단 ·치료·경감· 처치 또는 예방, 의학 적 효능·효 과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토피 .모낭충 .심신피로 회복 .건선 .노인소양증 .살균·소독 .항염·진통 .해독 .이노 .항암 .항진균·항바이러스 .근육 이완 .통증 경감 .면역 강화, 항알레르기 .찰과상, 화상 치료·회복 .관절, 림프선 등 피부 이외 신체 특정부위에 사용하여 의학적 효능, 효과 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여드름 .기미, 주근깨(과색소침착증) .항균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하되, 이 경우에도 액체비누에 대해 트리클로산 또는 트리클로카반 함유로 인해 항균 효과가 '더 뛰어나다', '더 좋다' 등의 비교 표시·광고는 금지
피부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선, 틴살 .기저귀 발진 .피부 독소를 제거한다(디톡스, detox) .피부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상처로 인한 반흔을 제거 또는 완화한다. .○○○의 흔적을 없애준다. <예시> 여드름, 흉터의 흔적을 제거 .홍조, 홍반을 개선, 제거한다.(메이크업을 통해 홍조, 홍반을 가려준다는 제외) .가려움을 완화한다(피부건조에 기인한 가려움 완화는 제외) .뽀루지를 개선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피부노화 .셀룰라이트 .붓기·다크서클 .피부구성 물질(예:효소, 콜라겐 등)을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시킨다. 	단, [별표2] 1.에 해당하는 표현은 제외한다.

모발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모 . 탈모방지, 양모 . 모발의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 . 제모에 사용한다. . 빠지는 모발을 감소시킨다. . 모발 등의 성장을 촉진 또는 억제한다. . 모발의 두께를 증가시킨다. . 속눈썹, 눈썹이 자란다. 	
생리활성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혈액순환 . 피부재생, 세포 재생 . 호르몬 분비촉진 등 내분비 작용 . 유익균의 균형보호 . 질내 산도 유지, 질염 예방 . 땀 발생을 억제한다 . 세포 성장을 촉진한다. . 세포 활력(증가), 세포 또는 유전자(DNA) 활성화 	
신체개선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이어트, 체중감량 . 피하지방 분해 . 얼굴 윤곽개선, V라인 . 체형변화 . 몸매개선, 신체 일부를 날씬하게 한다. . 가슴에 탄력을 주거나 확대시킨다. .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원료 관련 표현	. 원료 관련 설명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사용	
기타	. 메디슨(medicine), 드럭(drug), 코스메슈티컬 등을 사용한 의약품 오인 우려 표현	

구분	금지 표현	비고
기능성 관련 표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성 화장품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미백, 화이트닝(whitening), 주름(링클, wrinkle) 개선, 자외선(UV)차단 관련 표현 .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또는 기능성화장품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광고 	

<p>원료 관련 표현</p>	<p>.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하지 아니한 제품에 '식약처 미백 고시성분 OO 함유' 등의 표현 .기능성 효능·효과 성분이 아닌 다른 성분으로 기능성을 표방하는 표현 .원료 관련 설명시 기능성 오인 우려 표현 사용(주름개선 효과가 있는 OO 원료)</p>	
<p>유기농화장품 관련</p>	<p>.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유기농 화장품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제품에 '유기농(organic)' 관련 표현</p>	<p>제품명에 유기농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기농 원료가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전체 구성성분 중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함.</p>
<p>특정인 또는 기관의 지정, 공인 관련</p>	<p>.OO 아토피 협회 인증 화장품 .OO 의료기관의 첨단기술의 정수가 탄생시킨 화장품 .OO 대학교 출신 의사가 공동개발한 화장품 .OO 의사가 개발한 화장품 .OO 병원에서 추천하는 안전한 화장품</p>	
<p>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p>	<p>.체내 노폐물 제거(피부·모공 노폐물 제거 관련 표현 제외) .배합금지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표현(무첨가, free 포함) <예시> 無(무) 스테로이드, 無(무) 벤조피렌 등 .부작용이 전혀 없다. .먹을 수 있다. .일시적 악화(명현현상)가 있을 수 있다. .필러(filler), 지방볼륨생성 .보톡스 .레이저, 카복시 등 시술 관련 표현</p>	
<p>줄기세포 관련 표현</p>	<p>.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기원 표현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다만, 식물줄기세포 함유 화장품의 경우에는 제외) <예시> 줄기세포 화장품, stem cell, ○억 세포 등</p>	<p>.「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 3]에 적합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에만 불특정인의 '인체 세포·조직 배양액' 표현 가능</p>

<p>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표현</p>	<p>.성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 - 여성크림, 성 윤희작용 - 쾌감을 증대시킨다. - 질 보습, 질 수축 작용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시 및 광고 - 성기 사진 등의 여과 없는 게시 - 남녀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표시 또는 광고</p>	
<p>그 밖의 기타 표현</p>	<p>.동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인증을 받은 제품임</p>	<p>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보고)관련 표현 제외</p>

[별표]

화장품 표시·광고 주요 실증대상

구 분	실증 대상	비 고
<p>1.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별표에 따른 표현</p>	<p>.여드름성 피부에 사용에 적합 .항균(인체세정용 제품에 한함) .일시적 셀룰라이트 감소 .붓기 완화 .다크서클 완화 .피부 혈행 개선 .피부노화 완화, 안티에이징, 피부노화 징후 감소 .콜라겐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효소 증가, 감소 또는 활성화 .기미, 주근깨 완화에 도움</p>	<p>.인체적용시험 자료로 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기능성화장품에서 해당 기능을 실증한 자료로 입증 .미백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자료로 입증</p>
<p>2. 효능·효과·품질에 관한 내용</p>	<p>.화장품의 효능·효과에 관한 내용 <예시> 수분감 30% 개선효과 피부결 20% 개선 2주 경과 후 피부톤 개선 .시험·검사와 관련된 표현 <예시> 피부과 테스트 완료 oo시험검사기관의 oo 효과 입증</p>	<p>.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 .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외 시험자료로 입증</p>

	<p>.제품에 특정성분이 들어 있지 않다는 '무(無)oo' 표현</p>	<p>.시험분석자료로 입증 - 단, 특정성분이 타 물질로의 변환 가능성이 없으면서 시험으로 해당 성분 함유 여부에 대한 입증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조관리 기록서나 원료시험성적서 등 활용</p>
	<p>.타 제품과 비교하는 내용의 표시·광고 <예시> “○○보다 지속력이 5배 높음”</p>	<p>.인체적용시험 자료 또는 인체의 시험자료로 입증</p>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 금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 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 추적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
5.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
6.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건강기능식품 시행규칙 제21조(허위·과대의 표시·광고의 범위)

과대광고 해당되는 경우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나. 질병 또는 질병군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다만, 질병이 아닌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다.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대하여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라. 질병 및 그 징후 또는 증상과 관련한 제품명, 학술자료, 사진 등(이하 이 목에서 "질병정보"라 한다)을 활용하여 질병과의 연관성을 암시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 1) 질병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 2) 질병정보를 제품의 기능성 표시·광고와 명확하게 구분하고, "동 질병정보는 제품과

	<p>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등의 표현을 병기한 표시·광고</p> <p>마. 의약품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바. 의약품을 대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p> <p>사. 의약품의 효능 또는 질병 치료의 효과를 증가시킨다는 내용의 표시·광고</p>
<p>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법 제 5 조부터 법 제 7 조까지의 규정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15 조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이나 등록·신고한 사항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 20 조제 1 항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지 아니한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다. 정부 또는 관련공인기관의 수상·인증·선정·특허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라.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섭취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p>
<p>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p>	<p>가. 각종의 감사장 또는 체험기 등을 이용하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또는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광고</p> <p>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대학교수 또는 그 밖의 자가 제품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제품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표시·광고. 다만, 해당제품의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한 사실을 표시·광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다.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 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p> <p>라. 해당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소·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내용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되게 하는 광고</p> <p>마. 비교표시·광고의 경우 그 비교대상 및 비교기준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비교내용 및 비교방법이 적정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광고</p> <p>바. 「식품·의약품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 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검사한 결과를 이용한 표시·광고</p> <p>사. 법 제 15 조제 2 항에 따라 제출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인체적용시험 결과(이하 이 목에서 "인체적용시험결과"라 한다)를 일부 삭제하거나 변경하여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사용 전후를 비교하는 등 해당 건강기능식품의 기능 또는 효과에 대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기만하는 표시·광고. 다만,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p>
<p>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명칭(한약의 처방 명을 포함한다)의 표시·광고의 경우</p>	<p>법 제 24 조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에 관한 내용의 표시·광고</p>
<p>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경우</p>	<p>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에 관하여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나타내어 비방하는 표시·광고</p>

[3. 식품위생법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제13조 (허위표시 등의 금지)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 표시, 유전자재조합식품등 및 식품이력 추적 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포장에 있어서는 과대포장을 하지 못한다.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1.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2.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
3.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4. 다른 업체 또는 그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
5. 제12조의3제1항에 따라 심의를 받지 아니하거나 심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시행규칙 제8조(허위표시, 과대광고, 비방광고 및 과대포장의 범위)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의 범위는 용기·포장 및 라디오·텔레비전·신문·잡지·음악·영상·인쇄물·간판·인터넷,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 등의 명칭·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사용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한 사항이나 법 제37조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허가받거나 신고·등록 또는 보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2.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
3.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 품질·영양표시, 식품이력추적표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영양가·원재료·성분·용도와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4. 제조 연월일 또는 유통기한을 표시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의 표시·광고
5.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로서 식품학·영양학 등의 분야에서 공인된 사항 외의 표시·광고. 다만,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에 대한 식품학·영양학 등의 문헌을 인용하여 문헌의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고, 연구자의 성명, 문헌명, 발표 연월일을 명시하는 표시·광고는 제외한다.
6. 각종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하거나 "인증"·"보증" 또는 "추천"을 받았다는 내용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내용을 표현하는 표시·광고.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가.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제품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상장
 - 나. 「정부조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특별지방행정기관 및 그 부속기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 다.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인증,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받은 인증·보증
 -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식품등에 대한 인증·보증의 신뢰성을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받은 인증·보증
7. 외국어의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또는 외국과 기술제휴한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8. 다른 업소의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표시·광고나 "주문 채도" 등 제품의

제조방법·품질·영양가·원재료·성분 또는 효과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내용 또는 사용하지 않은 성분을 강조함으로써 다른 업소의 제품을 간접적으로 다르게 인식하게 하는 표시·광고

9.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저속한 도안·사진 등을 사용하는 표시·광고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음향을 사용하는 광고

10. 화학적 합성품의 경우 그 원료의 명칭 등을 사용하여 화학적 합성품이 아닌 것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

11. 판매사례품 또는 경품 제공·판매 등 사행심을 조장하는 내용의 표시·광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2.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특정 성분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표시·광고

13. 체험기를 이용하는 광고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1. 휴게음식점영업소 및 일반음식점영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식품,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소에서 조리·제공하는 식품 및 같은 호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소에서 제조·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2-2. 영업등록을 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한 표시·광고
3. 농업인등 및 영농조합법인과 영어조합법인이 국내산 농·임·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메주·된장·고추장·간장·김치에 대하여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이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한 표시·광고
4. 허위표시·과대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표시 및 광고의 범위에 해당하는 표시·광고

허위표시·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유효성	<p>가. 신체조직과 기능의 일반적인 증진을 주목적으로 하는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체의 건전한 성장 및 발달과 건강한 활동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건강유지·건강증진·체력유지·체질개선·식이요법·영양보급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3) 삭제 <2017. 1. 4.> <p>나. 식품영양학적으로 공인된 사실 또는 제품에 함유된 영양성분(비타민, 칼슘, 철, 아미노산 등)의 기능 및 작용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특수용도식품으로 임신수유기 영양보급, 병후 회복시 영양보급, 노약자 영양보급, 환자에 대한 영양보조 등에 도움을 준다는 표현 2) 비타민 ○는 ○○작용을 하여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표현 3) 칼슘은 뼈와 치아의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라는 표현 <p>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14 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한 영양소의 기능성분 함량</p>
용도	<p>제품의 제조목적이나 주요 용도에 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해당 제품이 유아식, 환자식 등으로 섭취하는 특수용도식품이라는 표현. 이 경우 특수의료용도식품에는 섭취대상자의 질환명을 표시할 수 있다. 2) 해당 제품이 발육기, 성장기, 임신수유기, 갱년기 등 사람의 영양보급을 목적으로 개발된 제품이라는 것과 이와 유사한 표현
섭취방법·섭취량	<p>섭취방법·섭취량에 관한 다음의 표현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p> <p>해당 제품의 식품영양학적 기준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섭취방법 또는 섭취량의 표현</p>